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공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및 정당한 사용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의 시범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6년 9월 7일
지식재산처장

□ 등록표지 도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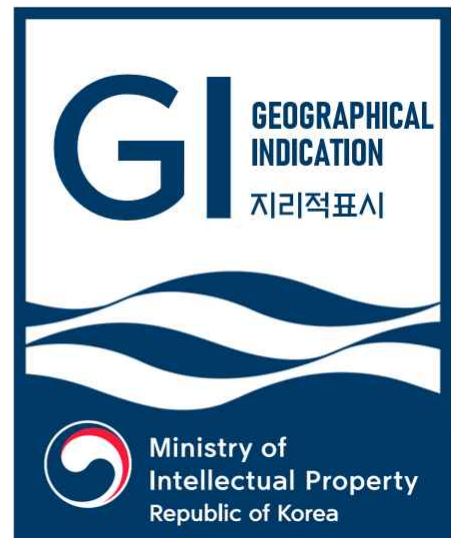
-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가 등록 사실을 상품·포장·홍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등록표지 마련
- 등록 및 정당한 사용 사실을 공통된 방식으로 표시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식별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 등록표지 디자인

국내용



해외용



□ 시범운영 개요

- (목적) 정식 제도 시행 전 실제 유통환경에 등록표지를 적용하여 현장 활용성과 사용·운영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
- (기간) 2026년 9월 7일 ~ 12월 31일
- (대상) 등록표지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

- (사용분야) 등록된 지정상품 및 그 포장재, 홍보물,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시범운영 참여신청서 1부
- (참여단체 확정) 등록현황 확인 후 개별 통보하며, 확정된 참여단체에 디자인 파일과 사용기준을 제공

□ 참여자 준수사항

- 등록된 지정상품에 한하여 사용하고,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표지의 비율·색상·형태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 등록표지는 지식재산처가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등록표지의 사용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용권한과 이 공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음
- 상표권 소멸·취소·무효 또는 사용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운영 및 사후관리

- 지식재산처는 시범운영 기간 중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경고·시정요청, 사용중지 요청, 표지제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본 시범운영은 정식 제도 도입 전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시적 운영으로, 법적 기반 마련 후 정식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임

- 문의처 :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천경호 주무관
전자우편(ipbez3152@korea.kr), 유선전화(042-481-537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붙임. 시범운영 참여신청서 1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서

신청인(상표권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번호	
	등록상표	
	지정상품	
등록표지 사용계획	사용매체 ☐ 상품 ☐ 포장재 ☐ 홍보물 ☐ 온라인 판매페이지 ☐ 기타()	

※ 확인 및 준수사항

본 신청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등록표지는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 중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등록표지의 형태·비율·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디자인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3. 등록표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등록표지가 지식재산처가 해당 상품의 품질·안전성·우수성 등을 인증·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소속 단체원이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체원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권한 및 등록표지 사용현황을 신청인이 관리하겠습니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소멸·취소·무효 또는 사용자격 상실 등 등록표지의 사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7. 시범운영 기간 중 지식재산처가 등록표지의 사용현황 확인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8.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요청·사용중지 요청·표지제거 요청 등 시범운영 기준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신청인(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